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관련 시설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8253호)

2021.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관련 시설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1. 2. 24.

다. 회 부 일 : 2021.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궁능, 전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관련 시설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안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5의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의 방문이 제한되고, 관련 행사가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 및 향유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 발생 시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감염병

1) 코로나19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는 2021년 11월경 백신접종률 70% 달성 및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으로 인해 문화재 관람·체험 기회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문화재 관련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0년 12월)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개 법률²⁾에서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에 감염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재기본계획³⁾에도 문화재 관련 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⁴⁾ 국민의 안전한 문화 활동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 해당 정의 규정이 없고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한 취지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씨름 진흥법」, 「관광기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년)

4)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로 개정된 「관광기본법」⁵⁾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다음 [표] 참조).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1. ~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u>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u>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379

5)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략)